

제23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주거복지
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4 월 8 일

여 수 시 장



여수시 조례 제2072호

붙임 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1부

여수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거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수시민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주거복지”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주거복지 지원대상자”란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
 - 나.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
 - 다.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
 - 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- 바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 - 사. 「주거기본법」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
 - 아.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서 다른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거주자 또는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.
 - 자. 「여수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자립준비청년
 - 차.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, 주거복지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여수시 주거복지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2. 주거복지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3.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4.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
 5. 주거복지 사업의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6.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
 7.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
-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 · 시행)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복지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 ·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

야 한다.

1.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
 2.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주거실태조사)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, 욕구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주택의 유형, 규모 및 점유형태
2. 주택의 구조, 설비 및 성능
3.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
4. 주택가격 및 임대료
5.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
6. 가구의 구성 및 소득
7.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

③ 그 밖에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시장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주거복지 사업) 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
 2. 주거복지 상담·정보제공 및 사례관리
 3.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 사업
 4.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
 5.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
 6.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 융자금 이자 지원
 7. 주거복지 연결망 구축 및 운영
 8.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단체·기관 지원
 9.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·조사 사업
 10.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주민 교육
 11.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
- ②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9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·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주거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·평가 등에 관한 사항
2.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·평가 등에 관한 사항
3. 주거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·위탁관리·평가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

제10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.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1.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
 - 2.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
 - 3.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·단체에 종사하는 사람
 - 4.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- 제11조(위원의 해촉)**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1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 - 2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3.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
 - 5. 그 밖에 직무태만,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하며, 해촉된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.

제12조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· 자문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(당사자가 법인 ·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·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
 5.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-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·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·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1.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 2.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관계 부서의 협조)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6조(회의록)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7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(주거복지센터의 설치)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주거복지 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9조(센터의 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주거복지 사업의 상담 ·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
2. 공공임대주택의 입주, 운영,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
3.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
4. 주거복지 관련 기관, 단체의 연계 지원
5. 주거복지 연결망 구축 및 운영
6.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

7.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
8.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제20조(관리 및 운영)**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시 출자·출연 기관,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·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관리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기관, 법인 또는 단체 등(이하 “수탁기관”이라 한다)의 정관으로 정한다.
-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- ⑤ 센터의 관리·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- ⑥ 시장은 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- 제21조(지도·감독)**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,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·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,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22조(위탁계약 해지 등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
2.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.

제2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